<bof>

1. [%1](#1 손금의 주요내용)(#2 손실로 인정되는 금액의 주요내용)(#3 Key takeaways of the amount recognized as losses)[n]
   1. [1](#1 손금의 개념)(#2 손실로 인정되는 금액의 뜻)(#3 Meaning of the amount recognized as a loss)[n]
      1. {1}(#1 손금을 구성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2 손실로 인정되는 손해나 비용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이나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법에서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면, 이런 손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손실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한 활동과 직접 연관되어야 합니다.)(#3 Damage or expense recognized as a loss refers to money spent by a corporation or event that has occurred to generate revenue.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by law, this loss should be understandable and reasonable to most people and should be directly related to the corporation's activities to generate revenue.){n}
   2. [%2](#1 손비의 범위)(#2 손해 또는 비용의 범위)(#3 Scope of loss or expense)[n]
      1. [%3](#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2 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구매비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구매비 및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3 Cost to purchase goods for sale or materials needed to make the products, and the incidental expenses related thereto)[n]
         1. [1] (#1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의미)(#2 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구매비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구매비 및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의 의미)(#3 This refers to the purchase price of goods for sale or the purchase cost of materials needed to make the product, and their related incidental expenses)[n]
            1. {1}(#1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매출원가 등) 및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제조원가 등)을 의미합니다.)(#2 상품을 판매하려면 그 상품을 사야하고, 또는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를 사고 제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구매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지출을 말합니다.)(#3 To sell the goods, a corporation or business entity must first buy the goods, and to make a product, it must buy raw materials and pay manufacturing costs. These are additional expenditures required in the purchasing or manufacturing process.){ e%1-1<n>,e2<n>}
         2. [2] (#1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의 제외사항)(#2 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구매비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구매비 및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3 Exclusions from the purchase price of goods for sale or the purchase cost of materials necessary to make products and their incidental expenses)[n]
            1. {1}(#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합니다.)(#2 대량으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 받는 할인이나 돌려받는 돈은 이 비용에서 제외합니다.)(#3 Discounts or rebates received when purchasing goods in bulk or paying in cash are excluded from the expense.){ e%1-1<n>,e1<n>}
      2. [%4](#1 판매한 상품과 제품 등의 부대비용 등)(#2 판매와 관련되어 부가적으로 지출한 비용)(#3 Additional expenses related to sales)[n]
         1. [1](#1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부대비용의 의미)(#2 판매와 관련되어 부가적으로 지출한 비용의 의미)(#3 This refers to additionally paid costs related to sales)[n]
            1. {1}(#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의미합니다.)(#2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추가 비용으로, 저장, 포장, 배송, 판매 활동을 돕기 위한 비용과 판매원에게 주는 보너스 등을 말합니다.)(#3 This refers to various additional costs incurred while selling goods or products, such as costs of storage, packaging, and shipping, expenses to support sales activities, and bonuses given to sales employees, etc.){e%1-1<n>,e2<n>}
         2. [2](#1 사전약정이 없는 판매수당 등)(#2 미리 약속 없이 주는 판매 보너스)(#3 Sales bonus given without prior agreement)[n]
            1. {1}(#1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2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주는 보너스등은 미리 주기로 약속하지 않더라도 손실에 포함합니다.)(#3 Bonuses and the like given to encourage sales are included as losses even if they are not promised in advance.){ e%1-1<n>,e1<n>}
      3. [%5](#1 인건비)(#2 일한 대가로 주는 돈)(#3 Money paid in return for labor)[n]
         1. [1](#1 인건비의 정의)(#2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의 뜻)(#3 This refers to money paid in exchange for labor)[n]
            1. {1}(#1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제공된 근로의 대가를 말합니다.)(#2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란 고용에 의해 일을 완료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3 Money paid in return for labor refers to the amount paid after completing work through employment.){ e%1-1<n>,e2<n>}
         2. [2](#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2 해외에 있는 자사의 회사에 보낸 임원이나 직원의 급여)(#3 Labor costs of executives and/or employees dispatched to overseas local corporations)[n]
            1. [3] (#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의미)(#2 해외에 있는 자사의 회사에 보낸 임원이나 직원의 급여의 의미)(#3 Salaries for executives and/or employees dispatched to its overseas local subsidiaries)[n]

{1}(#1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합니다.)(#2 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기 회사에 임원이나 직원을 보낼 때, 그 임원이나 직원에게 주는 급여도 포함됩니다.)(#3 This includes salaries paid to an executive and/or employee when an SME or a middle-standing enterprise under the relevant statutes sends the executive and/or employee to its overseas subsidiary){ e1<n>,e4<n>}

* + - * 1. [4] (#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제한사항)(#2 해외에 있는 자사의 회사에 보낸 임원이나 직원에게 주는 급여의 조건)(#3 Terms of salaries for executives and/or employees dispatched to its overseas subsidiary)[n]

{1}(#1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 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합니다.)(#2 국내 회사가 해외 자회사와 함께 지불한 급여의 50% 미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3 Applicable only if salaries are less than 50% of the total salaries paid by both a domestic corporation and its overseas subsidiary.) {e1<n>,e3<n>}

* + 1. [%6](#1 자산 양수 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2 자산 을 구매한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가치 하락분)(#3 If the price at which an asset is purchased is lower than the market price, decrease in its value)[n]
       1. [1] (#1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2 자산을 사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을 때,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가치감소비)(#3 The expense of value reduction regarding the difference from the market price, when an asset is purchased at a lower price than the actual price)[n]
          1. {1}(#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의 범위에 포함합니다.)(#2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산을 사서, 회사 장부에 기록한 금액이 시장 가격보다 낮다면 그 차이만큼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보게됩니다.)(#3 If an asset is purchased from a specially related party and the amount recorded in the corporation's books is lower than the market price, the difference is considered an expense since the value has decreased by the difference.) { e%1-1<n>,e2<n>}
       2. [2] (#1 자산 양수 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의미)(#2 자산을 사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을 때,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가치감소비의 의미)(#3 This refers to the expense of value reduction regarding the difference from the market price, when an asset is purchased at a lower price than the actual price)[n]
          1. [2x1](#1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2 실제 구매한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경우)(#3 When the actual purchase price is lower than the market price)[n]

{1}(#1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 가액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2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서 싸게 산 경우 그 차이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기록된 금액의 차이를 말합니다.)(#3 This refers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paid and the value recorded in the books, if the actual purchase price is lower than the market price){e1<n>,e2x2<n>}

* + - * 1. [2x2](#1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2 실제 구매한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비싼 경우)(#3 When the actual purchase price is higher than the market price)[n]

{1}(#1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의미합니다.)(#2 실제 구매한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서 비싸게 주고 구매한 경우, 그 차이는 시장 가격과 장부에 기록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합니다.)(#3 This refers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and the book value, if the actual purchase price is higher than the market price.) {e1<n>,e2x1<n>}

* + 1. [%7](#1 자산의 임차료)(#2 자산을 대여하고 낸 금액)(#3 The amount paid for taking a lease on an asset)[n]
       1. [1](#1 자산의 임차료 손금산입)(#2 자산을 대여하고 낸 금액 중 손실로 인정되는 금액)(#3 The amount recognized as a loss among the total amount paid for taking a leasing on an asset)[n]
          1. {1}(#1 일반적인 자산의 임차료는 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2 일반적으로 자산을 빌릴 때 내는 임차료는 손실로 인정됩니다.)(#3 Generally, rents paid for taking a lease on assets are recognized as losses.){e%1-1<n>,e2<n>}
       2. [2](#1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처리)(#2 건물을 빌린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처리)(#3 Treatment of insurance premiums borne by a corporation taking a lease on the building)[n]
          1. {1}(#1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 건물 등의 임차료로 손금산입합니다.)(#2 건물 주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건물을 빌린 회사가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 보험료는 건물을 빌린 회사의 임차료로 보아서 손실로 인정됩니다.)(#3 If the company that take a lease on a building pays a premium for the insurance that the owner of the building takes out, the premium is recognized as a loss as the rent of the company that takes a lease on the building.){e1<n>}
    2. [%8](#1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2 받을 수 없게 된 판매관련 세금)(#3 Unrecoverable sales-related taxes)[n]
       1. [1] (#1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 손금산입)(#2 받을 수 없게 된 판매관련 세금의 손실 인정)(#3 Recognition of unrecoverable sales-related taxes as loss)[n]
          1. {1}(#1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은 손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2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금액은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3 If you don't receive the 10% VAT you're supposed to receive when you sell products or goods, this amount can be considered a loss.){e%1-1<n>,e2<n>}
       2. [2] (#1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의 요건)(#2 받을 수 없게 된 판매관련 세금의 손실 인정 요건)(#3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unrecoverable sales-related taxes as a loss)[n]
          1. {1}(#1 부가가치세법§45에 따라 대손 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합니다.)(#2 판매 금액을 받지 못했을 때, 법에 따라 판매금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When the sales amount is not received, there is a provision that allows 10/110 of the sales amount to be excluded from the sales tax by law. However, the loss can be recognized only if this provision has not been invoked.){e1<n>}
    3. [%9](#1 자산의 평가차손)(#2 자산의 가치 하락분)(#3 Decrease in value of assets)[n]
       1. [1](#1 세법상 인정되는 평가차손의 손금산입)(#2 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가치 하락분)(#3 Decrease in value recognized as an expense by law)[n]
          1. {1}(#1 일반적인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만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2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장부에 비용으로 적어놓은 것을 평가차손이라고 합니다. 이런 평가차손은 보통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법에서 정해놓은 특별한 경우에만 이런 가치가 떨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3 If the value of an asset has decreased and such decrease is recorded as an expense in the books, it is called a loss in valuation. The valuation loss is not usually recognized as an expense. Thus, the amount of such decrease in value is recognized as a deductible expense only in special cases stipulated by law.){e%1-1<n>,e2<예를 들면>}
       2. [2](#1 세법상 인정되는 평가차손의 예)(#2 법에서 인정하는 가치 하락분의 예시)(#3 Example of decrease in value recognized by law)[n]
          1. {1}(#1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손(2001.12.31. 신설))(#2 회사가 파산하면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가치도 떨어지게되므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 하락분(2001.12.31. 신설))(#3 When a corporation goes bankrupt, the value of the issued stocks falls, so decrease in stock value is recognized as a loss for the bankrupt corporation (newly established on December 31, 2001)){e1<예를 들면>}
    4. [%10](#1 제세공과금)(#2 세금이나 공과금)(#3 Taxes or public charges)[n]
       1. [1](#1 제세공과금에 대한 손금산입)(#2 세금이나 공과금 중 손실로 인정되는 금액)(#3 The amount recognized as losses among taxes or public charges)[n]
          1. {1}(#1 법과 영의 규정에 의거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 제세공과금은 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2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들은 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법률에 따라서 몇몇 특별한 항목들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Generally, items such as taxes and public charges, can be considered expenses, but there are some special expenses which cannot be treated as deductible expenses by law){e%1-1<n>,e2<n>,e3<또한>}
       2. [2](#1 외국법인세액)(#2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3 Tax paid abroad)[n]
          1. {1}(#1 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합니다.)(#2 한국의 회사가 외국에서 얻은 수익으로 인해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 세금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어서, 한국에서의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3 Foreign corporate tax paid due to profits earned abroad by a Korean corporation is also recognized to some extent in South Korea, which allows for further tax reduction in Korea) {e%1-1<n>,e1<n>,e3<또한>}
       3. [3](#1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제세공과금)(#2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세금과 공과금)(#3 Taxes and public charges offset against retained earnings carried forward)[n]
          1. {1}(#1 법인이 손금계상이 가능한 제세공과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세금이나 공과금을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고 회사가 자본금 에서 차감했다면, 세법에 의해서 강제로 비용에 넣을 수 있습니다.)(#3 If a corporation does not record taxes or public charges as expenses bur deducts them from capital, they can mandatorily be included in expenses under the tax law.){e%1-1<n>,e1<n>,e2<또한>}
    5. [%11](#1 광업의 탐광비)(#2 광업의 탐광비)(#3 Prospecting fee in mining)[n]
       1. [1](#1 탐광비 의미)(#2 탐광비 의미)(#3 Meaning of the prospecting fee)[n]
          1. {1}(#1 광물의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광, 굴진탐광비용 등을 의미합니다.)(#2 광업의 탐광비: 광물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물리탐사, 광물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화학적 조사인 지화학탐사, 광물의 정확한 위치와 양을 알아내기 위해 땅속에 구멍을 뚫는 시추탐광, 그리고 광물을 끄집어내기 위해 터널이나 광구를 파는 굴진탐광비용을 의미합니다.)(#3 Prospecting fee in mining refers to the cost of physical exploration to find out the physical properties of minerals, geochemical exploration to locate minerals, drilling exploration to drill holes in the ground to determine the exact location and quantity of minerals, and excavation exploration to dig tunnels or mining areas to pull out minerals){e%1-1<n>,e2<n>}
       2. [2](#1 탐광을 위한 개발비)(#2 탐광을 위한 사전 지출비용)(#3 Advance expenses for prospecting)[n]
          1. {1}(#1 탐광을 위한 개발비도 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2 직접적인 광물 탐사와 채굴비용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처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런 개발비도 비용에 포함됩니다.)(#3 This is not direct mineral exploration and mining costs but the initial costs incurred to start these activities. These development costs are also included in such expenses.){e%1-1<n>,e1<n>}
    6. [%12] (#1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2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방문조사･훈련비)(#3 Overseas visiting & examination and training expenses related to work)[n]
       1. [1] (#1 해외시찰･훈련비 의의)(#2 해외방문조사비･훈련비 의의)(#3 Significance of overseas visiting & examination and training expenses)[n]
          1. {1}(#1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방문조사비･훈련비도 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2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얻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해외의 다른 회사나 조직을 방문하는 것을 해외시찰(해외방문조사)이라고 하며,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 세션에 참가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비용을 훈련비라고 합니다. 이런 해외시찰, 훈련비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3 Overseas inspection (overseas visiting & examination) refers to visiting other companies or organizations overseas to gain knowledge necessary for work or to obtain new ideas, and training expenses refer to the cost of improving work capability by participating in an educational program or training sessions. Such overseas inspection and training costs are recognized as expenses.){ e%1-1<n>,e2<또한>}
       2. [2] (#1 해외시찰･훈련비의 예외)(#2 해외방문조사･훈련비의 예외)(#3 Exception to overseas visiting & examination and training expenses)[n]
          1. {1}(#1 업무수행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2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여행 비용이나 일반적으로 업무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3 Overseas travel expenses not related to work or expenses exceeding the generally accepted amount are excluded.){e1<또한>}
    7. [%13](#1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법령§45))(#2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지 향상 비용(법령§45))(#3 Welfare enhancement expenses incurred for executives and/or employees (Article 45 of the Enforcement Decree))[n]
       1. [1](#1 임직원의 범위)(#2 임원 및 직원의 범위)(#3 Scope of executives and/or employees) [n]
          1. {1}(#1 직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합니다.)(#2 다른 회사의 직원이지만 일시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직원에 포함됩니다.)(#3 Employees also include employees of other companies who are temporarily working for the corporation.){n}
       2. [2](#1 손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의 유형)(#2 손실로 인정되는 복지 향상 비용의 유형)(#3 Types of welfare enhancement expenses recognized as losses)[T, e%1-1<n>,r1<n>]
          1. {1}(#1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2 =회사 내 체육비, 회사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교육･예술관련 비용, 회사 직원을 위한 회식비)(#3 =Intra-corporation sports expenses, education/art-related expenses for corporation employees, dinner expenses for corporation employees){n}
          2. {2}(#1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2 =회사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주식조합의 운영비용)(#3 =Operating costs of an employees-participating stock association){n}
          3. {3}(#1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2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3 =Health insurance premiums borne by a corporation){n}
          4. {4}(#1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 =법에 의하여 회사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운영비용)(#3 =Operating costs of daycare centers established within a company by law){n}
          5. {5}(#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2 =고용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3 =Insurance premium borne by a company among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n}
          6. {6}(#1 =기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에서 열거한 비용과 유사한 비용)(#2 =그 밖에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 같은 비용이나 위에 언급된 비용과 비슷한 비용을 말합니다.)(#3 =Other expenses, such as congratulatory and condolence expenses or similar expenses to the expenses mentioned above, paid to executives and/or employees within a socially acceptable and reasonable range.){n}
    8. [%14](#1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지출한 금액)(#2 임원이나 직원의 손해배상금을 회사가 지출한 금액)(#3 The amount spent by a corporation to pay executives’ and/or employees’ damages)[n]
       1. [1](#1 손해배상 대상 행위의 업무관련성)(#2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행위의 업무관련성)(#3 Work-relatedness of the act for which compensation or damages must be given)[n]
          1. {1}(#1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행위가 회사 업무와 직접 연관되어 있어야만,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The act that is subject to compensation or damages must be directly related to a corporation's business in order to treat the compensation as its expenses){ e%1-1<n>,e1<이와 더불어>}
       2. [2](#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닐 것)(#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닐 것)(#3 Not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t)[n]
          1. {1}(#1 임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2 손해 배상을 하게 한 행동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만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단순히 부주의한것이 아닌 지나치게 무책임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3 Compensation can be treated as a corporation's expenses only if the act that leads to compensation is not due to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corporation's executive or employee. In this case, gross negligence means grossly irresponsible or reckless behavior, beyond just carelessness.){e2<이와 더불어>}
    9. [%15](#1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2 회사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주식조합에 기부하는 자기회사 주식의 장부가격 또는 금품)(#3 The book value of treasury stocks, or money or other valuables, which are donated to an employees-participating stock association)[n]
       1. [1] (#1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등의 손금산입)(#2 회사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주식조합에 기부하는 자기회사 주식등의 비용처리)(#3 Recognition of the treasury stocks donated to an employees-participating stock association as expenses)[n]
          1. {1}(#1 법인이 해당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2 회사가 보유한 자기회사의 주식이나 금품을 회사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주식조합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비용에 해당합니다.)(#3 If a corporation donates treasury stocks or money or other valuables to an employees-participating stock association, the amount is classified as an expense.){ e%1-1<n>,e2<n>}
       2. [2] (#1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2 회사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주식조합에 기부하는 자기 회사의 주식)(#3 Treasury stocks donated to an employees-participating stock association)[n]
          1. [3](#1 손금산입 대상 자사주)(#2 비용처리가 가능한 자기 회사 주식)(#3 Treasury stocks eligible for expense recognition)[n]

{1}(#1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의미합니다. (기본통칙 19－19…45 ①))(#2 회사가 가지고 있었거나 새로 구매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이 참여하는 주식조합에 기부할 때의 그 주식을 말합니다. (기본통칙 19－19…45 ①))(#3 This refers to the already owned or newly purchased treasury stocks donated by a corporation to the employees-participating stock association. (General Rules 19-19…45 ①)){e1<n>,e4<n>}

* + - * 1. [4](#1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자사주)(#2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자사주)(#3 Treasury stocks not eligible for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n]

{1}(#1 증자방식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자사주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통칙 19－19…45 ①))(#2 회사가 주식을 새로이 발행(증자방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경우 그 자사주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통칙 19－19…45 ①))(#3 If a corporation issues new stocks (by capital increase) to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such treasury stocks are not subject to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General Rules 19-19…45 ①)){e1<n>,e3<n>}

* + 1. [%16](#1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인 미술품)(#2 장식 용도나 주변환경을 꾸미기 위한 미술품)(#3 Works of art for decoration or beautification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n]
       1. [1](#1 손금산입대상)(#2 비용처리대상)(#3 Works of art subject to recognition as expenses)[n]
          1. {1}(#1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은 손금의 범위에 포함합니다.)(#2 사무실이나 복도 같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을 꾸미기 위한 미술품을 사기 위해 쓴 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The money spent to buy a work of art to decorate a space (e.g., offices and hallways) that is visible to many people can be treated as an expense.){ e%1-1<n>,e2<n>}
       2. [2](#1 손금산입대상)(#2 비용처리대상)(#3 Works of art subject to recognition as expenses)[n]
          1. {1}(#1 거래단위별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2019.2.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5백만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2 2019.2.12. 이전의 경우 구매가격 5백만원 이하인 경우만 비용처리가 가능했지만, 이후 1천만원 이하 까지 인상되었습니다.)(#3 Expense recognition was only possible for a purchase of KRW 5 million or less on or before February 12, 2019, but has since then increased to KRW 10 million or less.){e1<n>}
    2. [%17](#1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2 광고나 홍보의 목적으로 나눠준 물건의 구입비용)(#3 Purchase price of items given away for advertising or promotion purposes)[n]
       1. [1](#1 광고선전비 등의 손금산입대상)(#2 광고나 홍보의 목적으로 나눠준 물건 중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3 Items that can be treated as expenses among those given away for advertising or promotion purposes)[n]
          1. {1}(#1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구입비용은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범위에서 손금에 해당합니다.)(#2 회사가 광고나 홍보를 목적으로 무료로 나눠준 물건의 구입비용은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의 범위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3 The cost to purchase items given away by a corporation for advertising or promotion purposes for free can be expensed up to KRW 50,000 per year.){ e%1-1<n>,e1<이때>}
       2. [2](#1 연간 5만원 기준금액 판정 시 고려사항)(#2 연간 5만원 기준금액 판정 시 고려사항)(#3 Considerations when determining the annual KRW 50,000 standard)[n]
          1. {1}(#1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중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하고 연간 한도금액 5만원을 계산합니다.)(#2 특정한 사람에게 무료로 나눠준 물건 중에서, 각각의 물품 가격이 3만원 이하인 것은, 일 년 5만원의 한도를 따지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Among goods given away free of charge to a specific person, the goods whose price per item is KRW 30,000 or less can be recognized as expenses regardless of the annual KRW 50,000 limit.){e1<이때>}
    3. [%18](#1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지급)(#2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등의 지급)(#3 Provision of the right to purchase stocks, etc.)[n]
       1. [1] (#1 주식매수선택권 등 지급 시 손금산입)(#2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등 지급 시 비용처리)(#3 Treatment as an expense when providing the right to purchase stocks, etc.)[n]
          1. {1}(#1 상법§340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의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근로복지기본법§39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의2 각 목의금액은 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2 법에서 정한 것에 따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의2 각 목의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3 The amount under each item in Subparagraph 19-2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for a person who has been provided with the right to purchase stocks as prescribed by the Act may be treated as an expense.) {e%1-1<n>,e2<n>,e4<n>}
       2.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9의2 각 목 손금대상금액)(#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9의2 각 목 비용처리 가능금액)(#3 The amount that can be treated as an expense under each item of Subparagraph 19-2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n]
          1. [3](#1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2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등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3 The relevant amoun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when executives, employees, or the like have been granted the right to purchase stocks, etc)[T,e1<n>,e3<n>]

{1}(#1 =1.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2 =1.미리 정해진 시기에 미리 정해진 주식의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돈이나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3 =1.The amount w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lready fixed purchase price and the market price at a predetermined time is paid in money or with the corporation’s stocks){n}

{2}(#1 =2.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2 =2.미리 정해진 시기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등의 권리를 행사하여 따라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 그 주식의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3 =2.The amount w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lready fixed purchase price and the market price at a predetermined time is paid in money or with the corporation’s stocks){n}

* + - * 1. [3x1](#1 주식기준보상)(#2 특정 기간에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3 The right to purchase stocks during a specific period)[n]

{1}(#1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2 나.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시간 동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등을 주고,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발생하는 차이액을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비용 처리 대상에 들어갑니다.)(#3 B. When a corporation grants executives and/or employees the right to purchase stock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pays with money the difference that arises between the exercise price and the market price, such payment is also subject to treatment as an expense.){e1<n>,e3<n>}

* + - 1. [4] (#1 주식매수선택권 등 지급 시 손금산입대상 지급범위)(#2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등 지급 시 비용처리 대상이 되는 부여 범위)(#3 The scope of grant which is subject to expense treatment when the right to purchase stocks, etc. are provided)[n]
         1. {1}(#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합니다.)(#2 해당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0% 범위 안에서만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3 These regulations apply only to when such rights are granted within the range of 10% of the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by the corporation.){e1<n>,e2<n>}
    1. [%19](#1 유족 학자금)(#2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3 School expenses paid to surviving family members)[n]
       1. [1](#1 손금산입 대상 유족학자금)(#2 비용처리 가능한 유족학자금)(#3 School expenses for surviving family members which are eligible for expense recognition)[n]
          1. {1}(#1 임원･직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2 임원이나 직원(단, 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상당히 소유한 경우는 제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위로금 같은 것들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3 Temporary payments, such as tuition fees or consolation payments, to surviving family members after the death of relevant executives and/or employees (however, employees who own a significant number of stocks of the corporation are excluded) can be treated as an expense.){e%1-1<n>,e2<n>}
       2. [2](#1 손급산입 대상 유족학자금 요건)(#2 비용처리 가능한 유족학자금의 요건)(#3 Requirements for school expenses for surviving family members eligible for expense recognition)[n]
          1. {1}(#1 사용인･임원 사망 이전에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2 임원이나 직원의 사망 전에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로금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이 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기준은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3 This refers to the amount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 predetermined standard for payment of consolation (if any) determined before the death of an executive and/or employee throug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rporation, or a decision by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or the board of directors. Such standards must be applied equally to all executives and employees.){e1<n>}
    2. [%20](#1 운영비 또는 수당)(#2 운영비 또는 수당)(#3 Operating expenses or allowances)[n]
       1. [1](#1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의 유형)(#2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의 유형)(#3 Types of operating expenses or allowances within the scope of losses)[T,e%1-1<n>]
          1. {1}(#1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2 =회사가 법에 따라 만들어진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이나 산업체에 부속된 중고등학교의 운영비)(#3 =Operating expenses of special school classes for the working youth established by companies by law or those of middle and high schools affiliate to businesses){n}
          2. {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2 =회사가 법에 따라 교육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채용을 전제로 하는 직업 훈련과정이나 학과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3 =Expenses required to establish and operate vocational training courses, departments, or the like on the premise of employment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entered into by the corporation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by law.){n}
          3. {3}(#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2 =회사가 법에 따른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3 =Allowances paid to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field training program provided by a corporation by law){n}
          4. {4}(#1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2 =회사가 법에 따라 현장실습수업을 제공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3 =Allowances paid by a corporation which provides field training classes to participating students by law){n}
    3. [%21](#1 기타 손비의 범위)(#2 기타 손해 또는 비용의 범위)(#3 Scope of other damage or expenses)[n]
       1. [1](#1 잉여식품의 무상기증)(#2 남은 식품의 기부)(#3 Donation of surplus food)[n]
          1. {1}(#1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17. 2. 4. 이후 기증분 부터 적용))(#2 2017년 2월 4일 이후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남은 식품을 무료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식품의 장부에 기록된 가격은 비용에 포함됩니다.)(#3 If a corporation whose main business is manufacturing, wholesale, or retail of food and household goods donates surplus food/goods for free from February 4, 2019, the book value of the donated food/goods is included in an expense.){e%1-1<n>}
       2. [2](#1 기타 손비의 유형)(#2 기타 손해 또는 비용의 유형)(#3 Types of other damage or expenses)[T,e%1-1<n>]
          1. {1}(#1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2 =판매한 자산의 판매 당시 장부에 기록해둔 금액)(#3 =The amount of sold assets recorded in the ledger at the time of the sale){n}
          2. {2}(#1 =유형자산의 수선비)(#2 =회사가 자산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하거나 복원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3 =Costs incurred by the corporation to maintain or restore the normal operating condition of assets){n}
          3. {3}(#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2 =형태가 있는 자산이나 없는 자산에 대한 가치 하락분)(#3 =Decrease in value of assets with or without a physical presence){n}
          4. {4}(#1 =차입금이자)(#2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3 =Interest on money borrowed for business){n}
          5. {5}(#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2 =회사가 만든 단체로써 법인이거나, 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나 협회에 내는 회비)(#3 =Membership fees paid to an organization which is established by businesses and takes the form of a juridical person, or to an association or trade union registered by law){n}
          6. {6}(#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 가액)(#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무료진료권이나 새마을진료권을 사용해서 한 무료진료의 비용)(#3 =The cost of free medical treatment performed by using a free medical treatment voucher or Saemaul medical treatment voucher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n}
          7. {7}(#1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2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사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거나 사용할 때, 이런 권리나 보상을 주는 회사의 주식가격이나 보상금액)(#3 =When employees of a corporation obtain or use the right to purchase or receive the corporation’s stocks, the stock price or compensation amount of the corporation that gives such right or compensation){n}
          8. {8}(#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2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가 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3 =Contributions borne by companies smaller than large corporations by law){n}
          9. {9}(#1 =동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2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미리 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나누는 방법에 따라 나눠 받은 손해)(#3 =Losses shared according to a profit and loss sharing plan determined in advance between people who work together){n}
          10. {10}(#1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2 =회사의 임직원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돈이나 물건의 가액)(#3 =The value of money or goods donated to a welfare program for a corporation's executives and employees, or a welfare program jointly operated by several companies){n}
          11. {11}(#1 =기타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2 =기타 이외의 손해나 비용으로 회사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금액)(#3 =The amount given or to be given to the corporation as other losses or expenses){n}
    4. [%22] (#1 상품권)(#2 상품권)(#3 Gift certificate)[n]
       1. [1](#1 상품권 손금인정 원칙)(#2 상품권 비용인정 원칙)(#3 Principle of recognizing gift certificates as expenses)[n]
          1. {1}(#1 상품권 사용용도에 따른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경비와 같이 사업관련성･사용용도 등에 따라 구분합니다.)(#2 상품권도 일반적인 회사의 비용처럼 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3 Gift certificates, like typical expenses of a corporation, must also be related to business.){e%1-1<n>,e2<n>,e3<n>}
       2. [2](#1 $(사업관련성･사용용도 등에 따른 구분))(#2 $(사업관련성･사용용도 등에 따른 구분))(#3 $(Classification according to business relevance, purpose of use, etc))[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1<n>}

* + - 1. [3](#1 상품권의 업무관련성 입증)(#2 상품권의 업무관련성 입증 방법)(#3 Methods of proving the business relevance of gift certificates)[n]
         1. {1}(#1 상품권 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2 회사는 상품권 사용 금액에 대해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영수증이나 회사 내부 승인서 같은 명확한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3 The corporation must provide clear evidence and data, such as receipts or internal approval documents, showing that the amount of the gift certificates was used for corporation business.){e1<n>}
  1. [%23](#1 기타 특정 손금)(#2 그 밖의 손해 또는 비용)(#3 Other losses or expenses)[n]
     1. [1](#1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산입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2 세법에서 손실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3 There are some matters in the tax law that are stipulated as losses)[n]
        1. [%24](#1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조정)(#2 법에 따라 준비해둔 금액에 추가하는 금액의 비용처리)(#3 Treatment of money added to the amoun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as expenses) [n]
           1. [1] (#1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충당금의 유형)(#2 법에 따라 준비해둔 금액의 유형)(#3 Types of the amount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Act)[T,e%1-1<n>,e1<n>]

{1}(#1 =책임준비금(법법§30))(#2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이나 손실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둔 금액)(#3 =The amount prepared in advance for liabilities or losse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n}

{2}(#1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2 =직원들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위해 미리 적립해놓는 금액)(#3 =The amount set aside in advance for severance pay to be paid to employees upon retirement){n}

{3}(#1 =대손충당금(법법§34))(#2 =회사가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놓는 금액)(#3 =The amount prepared in advance in the event that a corporation encounters receivables that are difficult to collect){n}

{4}(#1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2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그 돈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때,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금액.)(#3 =The amount that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prepares in advance in anticipation of the difficulty of getting the money back when it has to pay off a company's debts in place of the latter and get the money back from the company later.){n}

* + - 1. [%25](#1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조정)(#2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해둔 금액의 비용처리)(#3 Treatment of different types of amounts prepared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s expenses)[n]
         1. [1] (#1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유형)(#2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해둔 금액의 유형)(#3 Different types of amounts prepared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n]

{1}(#1 손실보전준비금(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 등))(#2 회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 놓는 금액.)(#3 The amount prepared in advance by the corporation to cover a los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e%1-1<n>,e1<n>}

* + - * 1. [2] (#1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일몰종료)(#2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해둔 금액의 효력상실)(#3 Loss of validity of amounts prepared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n]

{1}(#1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대부분 일몰종료되었습니다.)(#2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대부분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3 Most of the reserv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have been rendered ineffective.){e1<n>}

* + - 1. [%26](#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법§29, 조특법§74))(#2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준비하는 금액의 비용처리)(#3 Treatment of the amount prepared by a not-for-profit organization as an expense)[n]
         1. [1] (#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비계상)(#2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준비하는 금액의 비용 기록)(#3 Recording of the amount prepared by a non-profit corporation as expenses)[n]

{1}(#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이를 손금산입 항목으로 인정합니다.)(#2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그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합니다.)(#3 If a non-profit corporation expenses the amount prepared in advance to achieve its purpose, such amount is recognized as an expense.){e%1-1<n>,e2<n>}

* + - * 1. [2] (#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2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준비하는 금액 설정대상)(#3 Subjec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mount prepared by a non-profit corporation)[n]

{1}(#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39①(1)의 비영리법인과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2 회사로서 인정 받는 단체들 중에서, 법인세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법에 의한 기금, 그리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입주민 대표 회의, 임차인 대표 회의 같은 경우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돈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3 Among organizations recognized as a corporation, non-profit corporation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funds by law, and apartments’ or multi-purpose buildings’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and tenant representative meetings may prepare money in advance to achieve their unique business purposes.){e1<n>}

* + - 1. [%27](#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해나 비용)(#3 Losses or expenses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n]
         1. [1](#1 주식의 포괄적 교환)(#2 회사 간 주식의 교환)(#3 Exchange of stocks between companies) [n]

{1}(#1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조특법§38))(#2 한국의 회사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의 완전한 자회사가 되는 경우, 이런 주식 교환으로 완전 자회사의 주주가 이익(예를 들어,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서 얻은 이익)을 얻었을 때, 이 이익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회사의 주주가 모회사의 주식을 팔 때까지 이 이익에 대한 세금은 미뤄집니다.)(#3 If a Korean company meets a certain requirement and becomes a wholly-owned subsidiary of another company in a manner of exchanging stocks, and the stockholders of the wholly-owned subsidiary earn a gain (e.g., a gain from selling their stocks at a higher price) as a result of such stock exchange, the amount of the gain can be treated as an expense, and the tax on the gain is deferred until the stockholders of the wholly-owned subsidiary sell their stocks of the parent company.){r%1-1<n>}

* + - * 1. [2](#1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2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3 Investment in-kind for the establishment of or conversion into a holding company)[n]

{1}(#1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3.12.31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이연 (조특법§38의2))(#2 회사의 주주들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신의 주식을 내주어 새로운 지주회사를 만들거나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로 바꾸는 경우, 주식을 내주면서 얻은 이익(예를 들면, 주식 가격이 달라서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은 미뤄집니다.)(#3 If A corporation’s stockholders contribute their stocks by December 31, 2023 to establish a new holding company or convert an existing corporation into a holding company, taxation on gains from such contribution (e.g., gains earned due to different stock prices) will also be deferred.){r%1-1<n>}

* + - * 1. [3](#1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산 증여)(#2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한 자산 기부)(#3 Donation of assets to improve financial position)[n]

{1}(#1 법인인 내국법인의 주주가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023.12.31. 이전에 일정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산 장부가액 손금산입 (조특법§40②))(#2 국내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좋게 만들려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한 조건을 맞추어 자산을 회사에 기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격를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3 In order to improve a domestic corporation's financial position, the stockholders may donate assets to the corpor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on or before December 31, 2023. In this case, the book value of the donated assets can be recognized as an expense.){r%1-1<n>}

* + - * 1. [4](#1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통한 채무면제)(#2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통한 빚의 면제)(#3 Debt relief through decision on approval of settlement plans, etc.)[n]

{1}(#1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한 금융기관은 동 금액을 손금산입(조특법§44④))(#2 정리계획이란 회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주나 돈을 빌려준 자들과 함께 회사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런 계획을 승인받고,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줄여주는 조치를 받았다면, 그 금융기관은 줄여준 금액만큼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3 A settlement plan means that a corporation facing a problem develops a plan with stockholders and lenders to rebuild the corporation. If the corporation has the plan approved and has received measures to reduce its debt from a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he financial institution can treat the reduced amount as an expense.){r%1-1<n>}

* + - * 1. [5](#1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출자지분 증여)(#2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한 주식등의 기부)(#3 Donation of stocks, etc. to improve financial position)[n]

{1}(#1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법인 주주가 보유한 출자지분 전부를 증여하여 무상 소각한 경우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을 법인 주주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조특법§45②))(#2 재무적으 어려운 회사의 법인인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기부하고, 회사가 그 주식을 없애는 경우, 기부한 주식의 장부가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If a stockholder of a corporation in financial difficulty donates his or her stocks to the corporation free of charge and the corporation retires the stocks, the book value of the donated shares may be recognized as an expense.){r%1-1<n>}

* + - * 1. [6](#1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순부채액)(#2 부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액)(#3 The amount of liabilities taken over from an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n]

{1}(#1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2023.12.31.까지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순부채액의 손금산입(조특법§52))(#2 2023.12.31.까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문제가 있는 다른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 문제 있는 은행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 그 차이액을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3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such as a bank, takes over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another troubled bank whose liabilities exceeds assets, the difference can be recorded as an expense.){r%1-1<n>}

* + - * 1. [7](#1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의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 등이 인수 및 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 등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조특법§39①))(#2 법에 따른 특정 회사의 빚 중에서 주주가 대신 갚아주는 돈은 그 주주의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3 Among the debts of a specific corporation under the Act, the money paid by stockholders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can be included under the stockholder's expenses.)[T,r%1-1<n>]

[7x1](#1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소유주식 등을 양도)(#2 재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보유한 주식을 판매)(#3 Sale of stocks held in accordance with a plan to resolve financial position)[n]

{1}(#1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2023.12.31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한 경우(조특법§39①(1)))(#2 어려운 재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의 주요 주주나 투자자,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이들이 소유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판매하는 경우)(#3 Where all stocks or equity shares owned by the corporation's major stockholders, investors, and specially-related persons are sold to a person other than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by December 31, 2023 in accordance with a plan to address difficult financial positions.){n}

[7x2] (#1 법인청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청산을 종결)(#2 회사가 회사를 정리하고 끝내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리한 경우)(#3 When a corporation submits its liquidation and settlement plan and is dissolved)[n]

{1}(#1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경우(조특법§39①(2)))(#2 회사가 청산 계획서를 내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사의 청산(회사를 정리하고 끝내는 일)을 완료한 경우.)(#3 Where a corporation submits its liquidation plan and completes the liquidation (settling its debts and closing its business) by December 31, 2024){n}

* + - 1. [%28](#1 그 외 기타 특정 손금)(#2 그 밖의 기타 비용)(#3 Other expenses)[T,r%1-1<n>]
         1. [1] (#1 그 외 기타 특정 손금의 유형)(#2 그 밖의 기타 비용의 유형)(#3 Types of other expenses)[n]

{1}(#1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법법§36∼§38))(#2 =정부의 지원금이나 공사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내는 돈,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서 받는 보험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비용처리)(#3 =Treatment of the money paid by those who benefit from government subsidies or construction and of the asset acquired through an insured amount in excess of the premiums paid as an expense.){n}

{2}(#1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2010.6.30. 이전 합병･분할 시에만 해당됩니다.)의 과세이연[법법§44, §46(’09.12.31. 개정전)])(#2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시 발생하는 평가 차익)(#3 =Valuation gains arising from a merger or split of a corporation on or before June 30, 2010){n}

{3}(#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법법§47))(#2 =회사가 일부 자산과 부채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되면 기존 회사의 자산이 새로운 회사에 이전되며, 이 때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도 비용에 포함됩니다.)(#3 =When a corporation spin off some assets and liabilities to create a new corporation, the assets of the existing corporation are transferred to the new corporation. The profits or losses arising during the process are also included in expenses.){n}

{4}(#1 =사업용자산을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법법§50))(#2 =사업용자산을 교환함에 따라 서로 가치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차이분의 비용처리)(#3 =Treatment of the difference arising from different values when exchanging business assets as an expense){n}

{5}(#1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특별상각(특별상각폐지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이 용인되는 것에 한함))(#2 =지금은 사라진 법에 따라 특별한 가치 하락을 허용하였었습니다. 특별상각은 일반적인 가치 하락분보다 더 빠르게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켜 세금을 더욱 줄일 수 있게 허용되었던 것인데, 특별상각은 폐지되었고, 이전 법률에 따라 특별상각을 이미 적용받고 있던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3 =Special depreciation was permitted under the now-repealed law. Special depreciation was allowed to further reduce taxes by reducing the value of the asset faster than general deprecation. While the law has been abolished, expense recognition is possible for cases where special depreciation was already applied under the previous law){n}

* 1. [%29](#1 예 규)(#2 많이 물어보는 질문답변)(#3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n]
     1. [1](#1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지)(#2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지)(#3 Are expenses related to a corporate vehicle provided to dispatched employees expenses related to vehicles for business use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s?)[n]
        1. {1}(#1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2021.9.29.))(#2 다른 회사의 직원이 우리 회사에 파견을 와서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된 금액' 이외의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도 일반적인 차량관련 비용이 아닌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됩니다.)(#3 If an employee of another corporation is dispatched to our corporation and provided with a vehicle for business use, any amount other than ‘expense incurred for business use’ is not treated as an expense. Also, the amount treated as an expense is treated as an entertainment expense, not as a general vehicle-related expense.){r%1-1<n>}
     2. [2](#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2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3 Can the following case be included in a deductible expense on de facto retirement?)[n]
        1. {1}(#1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2021.9.17.))(#2 퇴직금의 중간정산일 현재 회사의 임원이 세대주이고, 그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임원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주택 구입 비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는 회사의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3 If an executive of the corporation is the head of his/her household and the household has not owned a house for one year or longer as of the interim settlement date of severance benefits, such severance benefits can be recognized as an expense of the corporation.){ r%1-1<n>}
     3. [3](#1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세무처리)(#2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부여하는 형태의 주식 구매 옵션의 행사시점의 처리방법)(#3 A method of treatment at the time of exercise of a stock option in the form of granting treasury stocks)[n]
        1. {1}(#1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8.26.))(#2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주식 구매 옵션 행사시, 회사는 그 시장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3 When exercising a stock purchase option that grants its own stocks held by the corporation, the corporation may include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and the exercise price in an expense.){r%18-1<n>,r%18-2<n>,r%18-4<n>,r%21-2-7<n>}
     4. [4](#1 정관에 규정이 없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2 회사의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3 Whether retirement compensation paid in the absence of relevant rules of the corporation constitutes retirement income)[n]
        1. {1}(#1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서면-2021-법인-4421, 2021.8.10.))(#2 회사의 규칙에 따라 준 퇴직금은 퇴직급여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법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퇴직에대한 대가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봅니다. )(#3 Severance or retirement benefits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ion’s rules are regarded as severance pay. However, the amount paid in excess of that specified by law is regarded as compensation for typical work, rather than compensation for retirement.){r%1-1<n>}

<boe>